

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 본문 중 “충청북도지사”를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안 제5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를 “도지사”로 한다.

안 제13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에서”를 “도에서”로,
“충청북도”를 “도”로 한다.

안 제15조제1항 중 “기준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”를
“기준 보조율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”로 한다.

안 제31조 본문 중 “제28조제2항에 해당되어”를 “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보조대상 사업) 충청북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	제4조(보조대상 사업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 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시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의 비용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. ② ~ ④ (생략)	제4조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) ① 도지사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)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, 지원규모,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충청북도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② ~ ⑤ (생략)	제13조(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도에서----- -----도----- ----- ----- ----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시·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) ① 시·군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 사업별로 적용하는 <u>기준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 ② (생 략)	제15조(시·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) ① 시·군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 사업별로 적용하는 <u>기준보조율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</u> ② (생 략)
제31조(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) 도지사는 <u>제28조제2항에 해당되어</u>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 할 수 있다.	제31조(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) -----<u>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</u> <u>해당하여</u> ----- ----- -----.